산업기술혁신사업 성과활용평가 제도 안내

– 2020. 12. 2(월), KIAT(사업총괄팀) –

□ 평가 개요

○ **(평가목적)**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성과활용 우수과제 선정을 통한 연구수행주체의 연구 의욕고취 및 지속적인 성과활용 촉진, 성과극대화 유도

* (근거규정)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0조 및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44조 등

○ **(평가대상)** 종료3년차 과제(2020년 평가의 경우, 2017년 종료과제)

○ **(평가진행)** 정량·서면평가를 기본으로 제출된 성과활용보고서(서면)를 사전평가한 후,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**우수과제(80점 이상)**를 선정

* 과제별 주요내용, 성과현황, 정량평가 점수, 제재정보 등 종합적으로 고려

□ 결과 활용

○ (평가결과) 사업유형별 정량·서면평가를 통해 80점 이상인 과제를 우수과제로 선정하며, 우대가점 대상 기준에 따라 수행기관별 가점대상 선정

○ (결과활용) 우대가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,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中 3대 전담기관*의 신규과제 지원시 3년간 가점 부여

* 3대 전담기관 :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

** 우대내용 및 가점수준은 세부사업별 신규지원계획 공고 시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게시

< 참고 : 우수과제 가점부여 대상 기준 >

주관기관 수행유형 구분	우대가점 부여대상
영리	주관기관 및 참여기관(영리)
비영리	과제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(영리)

* 비영리 참여기관 모두 제외, 참여기관 책임자 제외

□ 사업부서 협조 요청사항

○ 신규지원계획 공고 시 '성과활용평가 우수'에 대한 **가점사항 반영**

- 타 전담기관(KEIT·KETEP)에서 선정한 우대가점대상일 경우에도 가점 부여

* 단, 사업별 특성에 따라 반영여부 및 규모 결정